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85

발의연월일: 2021. 6. 3.

발 의 자:최형두·강기윤·권명호

김성원 · 김영식 · 박성민

엄태영 · 이종성 · 정운천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5 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문화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특별시장· <u>광역시장·</u>	<u>광역시</u>
<u>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u>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	
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